

연구윤리위원회 규정

2023. 03. 23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역할)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) 1명, 간사 1명,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본 학회 통합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,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회내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
3.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문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
6.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나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 및 보고)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중요한 의결사항은 본 학회 통합회장에게 보고한다.

1. 회의개회 일시
2. 회의장소
3. 출석위원·결석위원의 성명
4. 경과보고, 상정안건, 의결사항 등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